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
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07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27.

발 의 자 : 김소희 · 이종배 · 김예지  
나경원 · 이현승 · 김상훈  
김은혜 · 김선교 · 조경태  
김승수 · 김기웅 · 김 건  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한옥체험업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, 이러한 관광시설이 주거지역에도 증가하면서 북촌한옥마을 등 일부 지역은 주민의 생활 환경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.

이에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같이 정주여건 보호 필요성이 큰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등록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4항 신설).

##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의 경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주민 정주환경 보호 또는 관광자원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등록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자치구만 해당한다.)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1. 한옥체험업
2.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 행	개      정      안
<p>제4조(등록) ① ~ ③ (생    략)</p> <p><u>&lt;신    설&gt;</u></p> <p>④ (생    략)</p> <p>⑤ 제1항 및 <u>제4항</u>에 따른 등                      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                    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                     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4조(등록) ① ~ ③ (현행과 같                      음)</p> <p>④ <u>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의                      경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                      로 정하는 사항 외의 주민 정                      주환경 보호 또는 관광자원 보                      전을 위하여 필요한 등록기준                      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                      를 거쳐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                      도·시·군·구(자치구만 해당                      한다.) 조례로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한옥체험업</u></p> <p>2. <u>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</u></p> <p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 <p>⑥ 제1항 및 <u>제5항</u>에 따른 등                      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                    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                     령으로 정한다.</p>